

**과태료의 부과기준**(제10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(제3호가목은 제외한다)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제2호가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) 천재·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

2)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.

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
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 | 과태료 금액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차                   | 2차   | 3차 이상 |
| 가.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br>1)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<br>2)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<br>3)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| 법 제98조 제3항 제1호 | 30만원<br>40만원<br>50만원 |      |       |
| 나. 삭제 <2017. 7. 17.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
| 다.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비치하지 않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| 법 제98조 제3항 제3호 | 30만원                 | 40만원 | 60만원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라. 삭제 <2017. 7. 17.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마.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8조 제2항     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| 바.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·보관하지 않거나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,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경우 | 법 제98조 제3항 제5호 | 30만원  | 40만원  | 50만원  |
| 사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·일시 사용 또는 축목·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8조 제3항 제6호 | 50만원  | 60만원  | 80만원  |
| 아.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8조 제1항     | 300만원 | 400만원 | 500만원 |
| 자.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8조 제3항 제7호 | 50만원  | 60만원  | 80만원  |